

01

S p e c i a l T h e m e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방안

글 이창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무관



1. 머리말

2010년 12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5만3천여 개소이며, 17만3천명의 생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영세성으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2010년도 노유자 시설에서의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화재발생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화재발생 건수(41,862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생활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특성상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010년 포항 인덕노인요양시설 화재사고로 사망 10명, 화상 17명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는 곧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관리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2. 2011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방안 시행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2011년도에 아래와 같이 시행한 바 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화재안전 교육용 매뉴얼과 각 시설별 다양한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에게 안전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교육용 매뉴얼의 내용은 소방대조직의 편성, 소방계획의 수립 및 운영, 화재시 안전관리 대응절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재의 예방·경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에서는 화재발생 전 화재안전관리 및 행동절차, 화재발생 시 화재안전관리 및 행동절차, 화재진압 이후 화재안전관리 및 행동절차 등을 담고 있다. 주요화재 예방수칙으로 전기화재, 가스화재, 유류 및 기타화재 등을 수록하였다.

둘째,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10.28. 개정, ’12.2.5. 시행)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주거시설에 대하여 “자동화재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기존 시설은 2년 유예) 함으로써 시설의 소방인프라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2년에 소방장비 확충 예산 125억원을 확보하여 1,250개 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사회복지 거주시설 5,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부품 교체 등)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결과를 통보하여 사후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점검반원을 구성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대비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방·가스설비 및 시설안전 등 점검을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협조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5,823명을 대상으로 총 22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한국시설안전공단 협조로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1300개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설물 하자 관련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전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다.

3. 2012 사회복지 안전관리 강화 계획

보건복지부는 2012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점검 및 교육의 전문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회복지이용시설도 화재대비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만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어 일부 이용시설(30개소)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미가입 상태에 있다.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협의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교육은 동영상(노인, 아동 등 시설 유형에 맞도록 제작) 상영 및 소화장비 실습교육(연기식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set, 스프링클러헤드 등 작동요령)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소방방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화재 및 시설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안전한 대피 등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시·도가 협력하여 3~4월중에 시·도당 1개소씩 사회복지시설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